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상조회 규약

개정 2004. 2. 26.

제 1조 (명칭)
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(이하 과기원) 교수 상조회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본회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소재지)
본회는 과기원내에 둔다.

제 4조 (회원)
본회의 회원은 과기원 재직중인 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로 (이하 교수라 칭함)한다.

제 5조 (조직)
본 회는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, 감사, 총무를 둔다.

제 6조 (회장)
1. 본회의 회장은 교수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2.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회장의 임기는 교수협의회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
제 7조 (총회)
1.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회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.
2.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시, 회원 1/3이상의 요구시 그리고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.
3. 총회의 개의 및 의결은 교수협의회칙에 준한다.

제 8조 (총회의 기능)
1.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1) 사업계획의 승인
   2) 예산 및 결산 승인
   3) 본 회의 해산 결의
   4)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9조 (부회장 및 운영위원)
1. 부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되 회장이 학과를 고려하여 임명한다.
2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 정수의 1/2을 개선한다.

제 10조 (운영위원회)
1.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에 관한 제반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한다.
2.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3.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

한다.

4.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
제 11조 (감사)

1. 감사는 교수협의회의 감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회무를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2. 감사의 임기는 교수협의회 감사의 임기에 준한다.

제 12조 (총무)

1.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관장,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둔다.
2. 총무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제 13조 (기금)

1.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다.
   1) 회비
   2) 증여금 및 증여자산
   3) 기타수입
2. 회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며 정교수 1호봉의 정액급의 0.5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14 조(상조금)

본회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교수 1호봉의 정액급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조금을 지급한다.

1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친상 (30%)
2. 본인의 퇴직 및 정년퇴직(단 본원 근속년수가 10년이상인자:30%, 10년미만의 경우에는 근무 연수에 비례한 비율)
3. 본인의 결혼 (1회), 자녀의 결혼(초혼에 한함) 및
   자녀의 상고 (국교생이상 결혼전) (15%)
4. 본인상 및 배우자상 (250%)
5. 자녀 고등학교 졸업시 선물 (5%)
   (과기원 재직시 사망한 전회원의 자녀에도 해당)
6. 출산시 상조금 (5%)
7.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음(100%)

제 15 조 (상조금 지급)

상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자는 지급사유와 내역(서식 1)과 해당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금전보전)

본회의 기금중 현금은 은행에 예입보관하고 금전출납부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.

제 17 조 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결산공고)

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금 운영상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
제 19 조 (회원의 입회 및 탈퇴)

1. 입회 : 1) 신임교수의 경우 부임후 1년 내에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2) 신임교수가 아닌 경우 입회시에는 입회후 1년간의 수혜유예기간을 둔다.
2. 탈퇴 : 정년 또는 퇴직시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임의 탈퇴는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 본 규약은 1993. 1. 1 부터 시행한다. 단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최초의 월 회비는 1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.
2. 본 규약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운영위원중 반의 임기는 94년 2월 말일까지이고 나머지 반은 95.2월 말일까지이다.
3. 최초의 감사는 교수협의회의 감사가 겸임하고 그 임기를 94.2월 말까지로 한다.
4. 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(1997. 11. 10)
5. 본 규약 제 19조는 정기총회('99. 2. 10)에서 의결한 후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 (2004. 2. 26)

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

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-1

상조회 운영 방안 안내

가. 공제액 및 방법

1. 공제금액 1만원
   정교수 1호봉의 정액급의 0.5% 이내 (2004.2 현재) 238 만원 x 5/1000 = 1.19만원
   상조회원수; 492명 x 1만원 = 492만원
2. 공제방법
   상기 금액 1만원씩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.

나. 상조금 지급방법

1. 상조건당 지원액수는 시작시점인 교수 1호봉의 정액급과 연계하여 산정한다. 2011. 4. 현재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(0.5% 를 10,000원으로 본다.)

ㅇ본인 및 배우자상 : 500 만원
ㅇ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: 60 만원
ㅇ퇴직, 정년퇴임 : 60 만원 (단, 10년 이상 근속에 한함, 10년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금액)
ㅇ본인 및 자녀결혼, 자녀상고 : 30 만원
ㅇ자녀 고등학교 졸업시 선물 : 10 만원
ㅇ출산시 상조금 : 10 만원
ㅇ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(200만원)

다. 기금운영

1. 회원의 정기 공제액 이외의 별도기금은 운영하지 않는다. 지급잔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은행에 예치하여 보관한다.

1992. 10., 1992. 12. 10 보완
1995. 4 보완
1996. 6 보완
1997. 11 보완
2004. 2 개정